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를
본인으로 한정〉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860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를 본인으로 한정	3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86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1. 26.
- (3) 회 부 일 : 2024. 11.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대신 지급한 금액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나 이송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해 응급환자 본인 외에도 응급환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취약

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를 본인으로 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에 대한 상환의무자의 범위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에서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 ③ (생략)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u>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u>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④ ----- ----- ----- <u>본인</u> ----- -----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대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의료기관·이송기관에 대한 대지급금 심사·지급과 환자로부터의 대지급금 상환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이 과정에서 응급환자 본인의 대지급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그 배우자나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한 대지급금 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환의무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가족들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나 민법에 따른 상속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동법에 따라 대지급금 상환의무가 부과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확대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

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여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확대를 위하여 대지급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대지급금의 구상권을 본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이중적인 보호가 될 여지도 있음.

□ 또한, 현행법 제22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는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등 대지급금 상환이 곤란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결손 처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한 결손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¹⁾하는 등 상환의무자에게 부담이 가

지 않도록 상환 불가 상황에 대한 확인 및 구상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① 법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은 응급상황 당시 응급진료비 부담을 할 수 없어 응급진료를 거부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응급진료비를 대지급하는 제도로,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결손처분 처리지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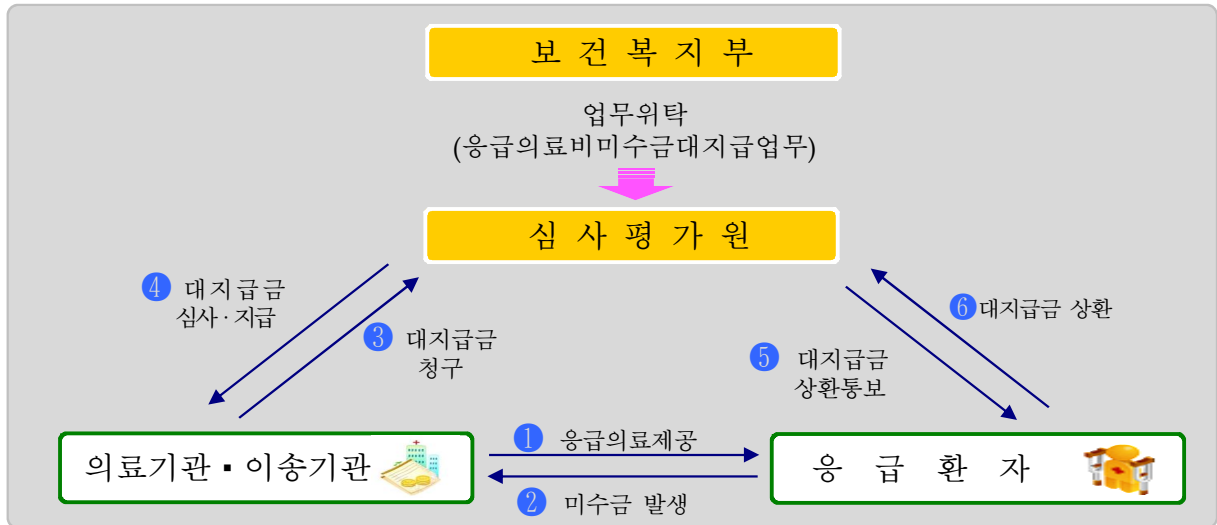
본인 외 상환의무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일부 상환의무자 범위 조정의 검토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 또는 1촌의 직계혈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별도 제한없이 응급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취약계층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할 경우 미수금 환수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대지급금 재원을 국고에서 상향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동 제도의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임.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대지급함으로써 진료 거부를 방지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취지이므로 상환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는 동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1】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 집행 절차



【참고2】	체불 임금 지급, 범죄피해자 구조 관련 대지급제도
--------------	------------------------------------

□ 임금채권 보장제도

-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 해주는 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3. (생략)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제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애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애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